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6층 | 메일 : 416network@416act.net

연락처 : 02-2285-0416 | 홈페이지 : 416act.net | 문의 : 박래군 010-3496-3265

[현장 보도 자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생명안전기본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 1. 취지 및 배경

- 2025년 3월 10일,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인의 공동발의로 22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12주기(4월 16일)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생명안전기본법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생명안전동행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심사 지연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국회가 약속한 ‘세월호참사 12주기 전 제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및 국회 앞 농성 돌입을 선언합니다.

### 2. 주요 요구

- **정부 이행 촉구**
  -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12주기(4/16) 전 제정’을 위해 행안부는 적극 나서라
- **국회/행안위 법안 심사 정상화**
  -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행안위원장 등에 신속 처리 지시하라
  -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심사에 즉각 임하라

- **시민 행동 공식 선포**

- 국회 행안위 의원 대상 '문자 보내기' 시민 행동 돌입
- 법안 제정 시까지 국회 앞 농성 지속

### **3. 슬로건**

- "세월호참사 12주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생명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국회는 즉각 심사에 착수하라!"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대로 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재난참사 독립적조사기구는 상설기구로!"

### **4. 기자회견 이후 후속 행동 계획**

#### **1) 국회 앞 농성 돌입**

- 기자회견 직후 농성 천막 설치, 1인 시위·연속 집회 계획 수립
- 참여 단체별 순번 배정, 피해자 가족 직접 참여 보장

#### **2) 시민 행동**

- 문자 보내기 :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문자 발송
- 시민 참여 독려 SNS 콘텐츠 : 피해자 영상, 카드뉴스, 문자 문구 템플릿 배포

#### **3) 4월 16일 12주기 행동과 연동**

- 법안 미처리 시 12주기 시민대회에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 발표
- 법안 통과 시 12주기 행사에서 제정 성과 공식 선언

### **5. 문의**

- 생명안전동행 | 집행위원장 : 박래군 | 연락처 : 010-3496-3265
- 생명안전동행 | 담당 : 김선우 | 연락처 : 010-3222-4551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 별첨 2. <기자회견문>

※ 별첨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생명안전기본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1. 개요

일시	2026년 4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주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약칭 '생명안전동행')
문의	집행위원장 박래군 (010-3496-3265) / 집행위원 김선우 (010-3222-4551)

### 2. 프로그램(순서)

	순서	발언자	내용
1		사회자 진행	발언자 소개, 농성 돌입 취지 설명
2	경과 보고	<b>생명안전동행 박래군</b> <b>집행위원장</b>	법안 현황 및 국회 행안위 상황 브리핑 국회 내 상황 및 법안 처리 촉구 발언
3	발언1. 참사 피해자	<b>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b> <b>김재만 직무감사</b>	
4	발언2. 참사 피해자	<b>재난참사피해자연대 조순미</b> <b>운영위원</b>	법 제정 지연에 대한 유가족·피해자 입장 발언
5	발언3. 산재 피해자	<b>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b> <b>'다시는' 김미숙 공동대표</b>	
6	발언4. 시민사회	<b>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b> <b>윤복남 회장</b>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회/정부 역할 촉구
7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 단체·개인	농성 돌입 및 시민 행동 호소

##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요구한다.**

###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2026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이합니다. 12주기는 4월 16일이 12번째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겉보기와 달리 얼마나 허약했는지, 우리가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모두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시민들은 안전할 권리,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의 시간 동안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노란 리본에 이어 주황, 보라, 초록, 파란 리본이 우리의 가방에 달려 있습니다. 리본이 늘어갈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국가는 없었다.”라는 절규는 반복되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재난·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가는 무능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시민들은 변했습니다. 재난·참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며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동료시민들은 함께 애도하며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월호참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재난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지만, 국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제 역할 못하는 국가를 그대로 방치할 셈입니까?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21대 국회는 법안 심의 한 번 하지 않은 채 법안이 자동 폐기되게 했습니다. 2025년 3월, 생명안전기본법이 다시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법안 심의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실현시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다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국가, 구조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는 국가, 안전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는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참사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사회적으로도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생명과 안전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삶의 기초,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될 생명안전기본법을 온전히, 그리고 지체없이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참사로부터 12년,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이윤보다 생명을 지키는 사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외침을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8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4.16해외연대,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슴기 살균제 참사 / 공주소대부고 병영체험학습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제천화재참사광주학동참사// 부천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생명안전기본법 협의안 설명자료

### 1. 주요 경과

- 2021. 11. 생명안전기본법 발의(대표의원 우원식) /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2025. 3. 10. 박주민,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77명 의원 명의로 발의
- 2025. 7. 16. 이재명 대통령, 재난참사 4개 단위 초청행사.
- 2025. 9. 16.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 123개 국정과제 중 72번 과제로 포함됨.
- 2025. 12. 16. 행안위 제2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개최
- 2026. 3. 19. 시민동행과 행안부 소통 및 법안 최종 조율

### 2.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 가. 법안의 지위와 구조

-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을 비롯한 안전분야에서 최상위법으로 기능
- 총 4개의 장, 25개의 조항으로 구성
- 부칙에서 공포후 6개월 뒤 시행
- \* 생명안전종합계획, 안전관련기준/수준진단/안전영향분석평가, 독립조사기구는 1년 뒤 시행

#### 나. 주요내용

##### <1장 총칙>

-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및 기본적 권리의 보장, 실질적 참여와 정보 접근, 안전사고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 함(안 제2조 제2호)
-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음(안 제4조)
-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실질적 참여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sup>1)</sup>를 보장받음(안 제5조)
- 국가 등은 안전권 보장 및 정책수립 책무, 실질적 참여와 정보접근 보장,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안전약자 보호, 통합적 관리체계 수립, 정보공개, 교육 및 훈련 실시 책무를 가지며, 기업 등은 안전사고에 있어 필요한 조치, 정책협력,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안전약자 보호, 조사 방해 금지 등의 책무를 가짐(안 제6조)

##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

---

1)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5.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6.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7.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고용유지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8.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 9. 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10.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를 받을 권리 11.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12.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3.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4.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전위원회를 두고, 정부에게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인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다른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지위를 갖게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국가에게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등>

- 안전관련기준을 설정, 공표, 평가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 수준 및 취약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법령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를 받은 걸로 보고, 대상, 방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할 국가의 의무 등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등과 관련 기업등에 판결서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 국가의 객관적 및 전문적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안 제18조, 제19조)
  - 독립조사기구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조사위원회를 두고,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안전사고,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안전사고를 조사하도록 함(독립조사기구 관할이 아닌 조사기구는 기존의 법령이 규정한 상설/비상설 기구에서 조사를 함)
  - 독립조사기구는 사고조사 및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의결 및 공표, 조

- 치결과 점검 및 확인,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규칙제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독립조사기구는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조회, 감정의회, 실지조사, 타 기구 사본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함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을 3명 이내로 하며,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두며, 그 구성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 등에게 기억과 추모, 공동체회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0조, 제21조)
  -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로서 대피계획 및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체계(전담기구)를 운영하도록 하였음(안 제22조, 제23조)
  - 피해자 정보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안 제24조, 제25조)